

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

[김보경 의원 대표발의]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19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2. 3. 2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 이대곤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2022. 1. 21. 시행)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나. 모범공무원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다. 모범공무원 포상방법 규정(안 제3조)
- 라. 모범공무원 포상절차 및 시기, 인원 규정(안 제4조 ~ 제5조)
- 마.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및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
## 3. 제정규칙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9조,  
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포상대상)**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(이하 “모범공무원”이라 한다)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군의회”라 한다)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
2.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
3.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
4.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

**제3조(포상방법)** 포상은 표창장을 주되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.

**제4조(포상절차)**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군의회사무국장(이하 “사무국장”이라 한다)은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인 추천서를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추천한다.

② 사무국장이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, 직무내용,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. 다만, 「모범공무원 규정」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.

④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.

**제5조(포상시기 및 인원)** 포상은 연1회 12월 말에 시행하고, 포상인원은 연 1명이내로 선발하되,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6조(수당 지급)**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 수당을 지급하되,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.

②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.

**제7조(수당 지급의 중지)**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. 다만,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.

1. 퇴직 또는 면직된 때
2. 징계처분을 받은 때
3.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
4.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□ 지방자치법**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**□ 지방공무원법**

제79조(표창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.

**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, 감사장(패), 상장,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(이하 ‘모범공무원 포상’이라 한다.)으로 구분하여 행한다. 다만,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.